

2024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연계 "나는 가장이다" 사업 신청 안내문

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(재)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주거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 (임차보증금 대출)를 시행합니다.

1. 사업 개요

가. 사업명: 2024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 『나는 가장이다』

나. 주관/후원: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, (재)서민주택금융재단

다. 신청기간: 2024. 9. 9.(월) ~ 2024. 10. 4.(금) ※등기우편 접수 기준

(등기우편 발송 전 구비서류 일체를 파일로 전환하여 9. 25.(수)까지 이메일 발송해야 함)

라. 사업내용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(10만원 단위)

※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중인 (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) 세대는 최대 3백만원

마. 사업대상: 만 18세(취학 시 만 22세)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한부모(조손가족 포함)

바. 대출금 상환 방법: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원금상환 (무이자)

300만원 이하: 매월 5만원씩 상환 / 300만원 초과~ 500만원: 매월 10만원씩 상환

사. 문의: 복지환경지원팀 T. 02-861-3011 / E. hanbumo1@seoul.go.kr

2. 사업 내용

가. 대출금액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(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)

※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**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** 대출 가능

○ 전·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 (신규 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보증금액 확인)

1)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

: 750만원 - 500만원 = 250만원 (⇒대출 가능금액: 250만원)

2) 기존 보증금 2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8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

: 800만원 - 200만원 = 600만원 (⇒대출 가능금액 500만원/본인 부담금액 100만원)

3) 임대주택: 보증금 5,000만원(본인부담금 250만원)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 8,000만원

(본인부담금 400만원)으로 상향된 경우

: 400만원 - 250만원 = 150만원 (⇒대출 가능금액: 150만원)

※ 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측정함

나. 대출조건: 일정 기한 내에 **신규 또는 재계약 하여야 함**

구분	신규 또는 재계약일(당해 연도)	잔금지급일
3차	2024. 05. 01. ~ 2024. 10. 31.	2024. 05. 01. ~ 2024. 10. 31.

※ 단 LH/SH공사 임대주택에 한하여, 계약일이 당해 연도가 아니더라도 잔금지급일(입주일)로부터 1년 이내이고 상기 잔금지급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

다. 대출금 상환 방법 :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원금상환

대출금	상환 금액	상환기간	비고
3백만원 이하	매월 5만원	최장 60개월	
3백만원 초과 ~ 5백만원 이하	매월 10만원	최장 50개월	

3. 신청대상

가. 공통 기준: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가장

1) 만 18세 이하(취학 시 만 22세 이하)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
〈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%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〉					(단위: 원)
가구원수	소득기준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		비고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	
2인	3,683,000	130,901	74,359	132,127	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
3인	4,715,000	167,876	123,611	169,859	
4인	5,730,000	205,281	156,318	208,153	

※ 가구원수 :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수
만 18세 이하: 2006 1. 1. 이후 출생자(취학자녀: 2002 1. 1. 이후 출생자)

2) 임차보증금 보유기준: 월세 거주(계약) 시 월세 60만원 이하

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1억 2천 이하 / 광역시 9,000만원 이하 / 그 밖의 지역 8,000만원 이하

나. 대출 대상: 상기 두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
- 1) (월세, 전세)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세대
- 2)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
- 3) 비주택 거주 (한부모가족복지시설, 여관, 쪽방, 고시원, 비닐하우스, 쉼터 등)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등

다. 대출 불가 세대: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

- 1)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
- 2)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(민법상 대출 불가)
- 3) 가족(직계존비속, 형제자매)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4)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
- 5)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6) 신용관리 대상자 (개인회생, 파산 등)

*단,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,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

- 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(개인별 신청일자 기준) 성실 상환중인 자 (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)
-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

※ 대출 불가 세대가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, 향후 (재)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한받을 수 있음

7) 개인 간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

4. 사업 일정

구분	일정	비고
대출 신청 서류 접수	• 2024. 9. 9.(월) ~ 10. 4.(금)	-등기우편 10.4.(금)까지 도착분만 유효 -등기우편 발송 전 구비서류 일체를 파일로 전환하여 9.25.(수)까지 이메일 발송 해야 함
약정서 제출 대상자 발표	• 2024. 10. 28. (월)	-선정자 발표 ① 본 센터 홈페이지 공지 ② 선정된 신청기관으로 공문 발송 예정
대출 약정 서류 접수	• 대출 선정 이후 대출거래 약정서류 필수 제출 ※ 관련 내용 및 일정은 추후 안내	
대출금 입금	• 대출약정서류 접수 완료 후 11월 중	

※세부 사업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

5. 제출 서류 (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)

구분	구비서류	작성요령		
필수 서류	신청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식1. 신청기관 신청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센터 홈페이지 신청서식(서식1~2) 다운로드 -신청기관 신청서는 추천 대상자별 작성(필수) 	
	신청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식2. 대상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•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 • 현재 거주지 임대계약서 사본 -신청 전 신규(재계약) 임대차계약 완료한 경우 ① 확정일자 받은 기존계약서(사본) ② 확정일자 받은 신규계약서(사본) •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① 무상임차 ② 비주택 거주자 ③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 -본인 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서류만 가능 (표기된 서류는 수정테이프로 가리고 제출) -무상임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-시설거주자는 '시설입소 확인서' 제출 	
		소득 증빙 서류 (해당 분야 제출)	1.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(50%이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무상임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-시설거주자는 '시설입소 확인서' 제출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 	
			2. 기준 중위소득 50%초과~63%이하	
3. 기준 중위소득 63%초과~100%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해당)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증빙서류 제출 			
해당자	심사평가사 가점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소년 한부모 • 다자녀(3명 이상)양육한부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등본(신청자 연령 및 동거자녀) 확인 	
	신용회복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애인증명서 1부 •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,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가구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(구 1~3등급)인 경우에 한함 -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 	
	만 18세~22세 이하 취학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학증명서 • 휴학증명서(휴학시) 		

※ 신청 서식은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seoulhanbumo.or.kr)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

※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대출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폐기신청인 요청시에만 반환 가능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인 명의로 발급하여야 함

6. 서류 제출 순서

① (신청기관 담당자) 신청 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이메일 선제출

※ 서류 확인에 시일이 걸림으로 이메일 제출은 2024. 9. 25.(수) 까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

- 이메일 제출처: hanbumo1@seoul.go.kr
- 제목 및 파일명: “2024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(신청자 이름)”
- 나머지 구비 서류는 스캔 후 한 개의 pdf 파일로 전환 후 발송
- 이메일 하단에 신청기관 담당자명과 연락처 기재



② (본 센터) 이메일 제출한 스캔자료 검토 후 등기우편 제출 가능 여부 확인

- 신청기관 직인, 원본대조(담당자 확인) 등 누락사항 검토
- 제출된 필수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검토 후 신청기관 담당자에 우선 안내



③ (신청기관 담당자) 원본 등기우편 제출

- 주소: (06904)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소태산기념관 4층
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「2024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」 담당자 앞
- 접수일자 마감일 10. 4.(금)까지 등기우편 도착분만 유효
※ 접수일자 마감일까지 등기우편 미도착 분은 인정되지 않음



④ (본 센터) 제출서류 접수 및 확인

7. 신청기관 유의 사항

- 1)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에는 수정테이프 사용 혹은 볼펜으로 임의수정이 불가합니다. 내용을 잘못 기입한 경우, 다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- 2) 신청인 외 모든 제출 서류의 주민번호는 뒤 7자리를 지우고 제출 바랍니다.
- 3) 「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서식 2)」은 신청자 자필로 작성, ‘본인 확인 및 자필 확인’ 란은 신청기관 담당자가 직접 확인 및 서명해야 합니다.
- 4) 모든 제출 서류 사본은 반드시 ‘원본대조(담당자 확인)’ 해야 합니다.
- 5) 제출 서류 중 신규계약서에는 ‘확정일자’ 가 찍혀있어야 합니다.
- 6) 근거서류 불충분시 심사불가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. 서류 및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.
- 7) 신청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을 통해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
8. 대출 진행 기본 원칙

심사 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출을 신청한 대상자의 대출 지급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함
대출 사업 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미 대출을 지급 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 (형평성 고려)
신청 기관 협력지원 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출신청은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·단체에서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(개인신청 불가) • 신청기관은 추천 대상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대출 지급기관과 협력하며,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가 최종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, 대출약정서류를 대상자로부터 취합하여 본 센터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 - 신청기관에서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(거주지 이전, 연락처 변경 등)가 변경될 경우, 본 센터로 전달하여 주셔야 합니다. - 추후 대출지급이 완료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, 신청기관에서는 대출지급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합니다.